

2017년도 제1차 청렴옴부즈만 회의 결과

- 일시 : 2017. 3. 24(금) 11:00, 8층 회의실
- 참석자 : 6명
 - 청렴옴부즈만 : 전대일(변호사), 신금호(회계사)
 - 중 앙 회 : 총무부장, 인사팀장, 업무담당2
- 회의결과
 - 2017년도 반부패·청렴정책 추진계획 검토
 - (변호사 의견)
 - 내부직원에 대한 반부패·청렴 교육 지속 실시
 - 반부패·청렴 업무 진행과정에 내부직원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계기 마련 필요
 - (회계사 의견)
 - 내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, 세부적인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2017년도 청렴도·시책평가 워크숍 참석 이후 검토
 - 인사신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
 - (변호사 의견)
 - 인사 업무 부조리 발생 시 신고(상담) 창구로서 활용 및 인사제도 개선 관련 건의
 - 신고(상담)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비밀유지 관리 필요
 - (회계사 의견)
 - 중대한 인사관련 부패 문제는 담당업무 부서에서 신고 받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기존 E-클린 신고센터를 이용토록 하고, 경미한 수준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

□ 향후계획

- 4월 중 제2차 청렴옴부즈만 회의 개최 예정

※ 2017년도 반부패·청렴정책 추진계획 세부내용 검토

□ 회의사진



회의사진 1



회의사진 2

2017년도 제2차 청렴옴부즈만 회의 결과

□ 일시 : 2017. 6. 30(금) 11:00, 1층 숲카페

□ 참석자 : 6명

- 청렴옴부즈만 : 전대일(변호사), 신금호(회계사)
- 중 양 회 : 총무부장, 인사팀장, 업무담당2

□ 회의결과

- 근로기준법에 따른 감액 기준으로 규정 개정 사항

- (변호사 의견)

-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것이 우선
- 청렴위반에 따른 징계는 최소 감봉으로 인사적인 불이익이 크므로 감액기준을 근로기준법에 따르더라도 청렴위반에 따른 징계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

- (회계사 의견)

- 법령이 우선하기 때문에 감액기준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되 청렴위반 시 징계는 규정에서 정한바와 같이 감경의 대상에서 반드시 배제토록 조치

- 외부강의·회의 등 신고에 관한 사항

- (변호사 의견)

- 산림조합중앙회의 행동강령 중 외부강의·회의 등 신고관련 조문은 모든 외부강의·회의 등은 반드시 신고토록 조치하는 것으로 해석

- (회계사 의견)

- 대가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하는 것이 업무프로세서 처리에 효율적으로 판단되나, 우선적으로 타기관 및 사례를 판단하여 조정 필요

□ 향후계획

- 9월 중 제3차 청렴옴부즈만 회의 개최 예정
- ※ 각 부서 부패 개연성 관련 제도개선 사례 검토

□ 회의사진



회의사진 1

회의사진 2

2017년도 제4차 청렴옴부즈만 회의 결과

□ 일시 : 2017. 10. 27(금) 15:00~18:00, 8층 숲카페

□ 참석자 : 5명

- 청렴옴부즈만 : 전대일(변호사), 신금호(회계사)
- 중 앙 회 : 인사팀장, 업무담당2

□ 회의결과

○ 청렴업무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 반영

- (변호사 의견)

-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시 개인의 경우 객관적 검증이 어려우며, 실제 해당 업무 담당자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음.
청렴업무는 모든 임직원이 동참·실행할 필요가 있으며,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기관단위의 인센티브 부여 필요

- (회계사 의견)

- 청렴업무는 개인이 아닌 전사차원으로 이루어져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, 현재 상황에서는 개인이 아닌 기관표창과 부상(상금)등을 통하여 각 기관장이 선도하여 전 직원이 노력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

○ 기타 권고사항

- 징계변상예규중 주의촉구 등은 외부 감독기관 조치요구사항과 일치하지 않아 자칫 자의적 해석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독기관과의 요구사항 일치 필요(시정 요구)

※ 금년 중 개정토록 수용

□ 향후계획

- 안전 발생 또는 부패 개연성 제도 개선 요구사항 시 개최

□ 회의사진



회의사진 1



회의사진 2